

1. 개정이유

수도법 제74조의2에서 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을 수도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 또한 수도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 운영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단 기술인력으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 확대(제31조의3 개정)

1)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이 수도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음

2)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으로 공업용수도사업자까지 확대하여 기술진단 결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기술진단 기술인력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포함(별표8 개정)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21년 4월부터 신설하여 운영중

2)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자도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완료(2022.12.29.~2023.1.9.)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환경부령 제 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반수도사업자”를 각각 “수도사업자”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1. 정수장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격요건	인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 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명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2명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3명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3명

2.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격요건	인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명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명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명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u>일반수도사업자</u> 에게 기술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 ----- ----- <u>수도사업자</u> ----- ----- -----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u>일반수도사업자</u> 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 ----- ----- ----- ----- ----- ----- <u>수도사업자</u>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u>일반수도사업자</u> 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	③ ----- ----- ----- ----- ----- <u>수도사업자</u> ----- -----.

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 2. (생략) ④ (생략)	----- -----.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